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3일,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의원)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8조제1항 각 호1)의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생략)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부정 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3)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⁴⁾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도에 특허청 내부 규정에 따라 도입·추진하다가 2014년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⁵⁾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이 영업비밀 수사업무를 시작(2019.년 4월)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유출된 사건이 매년 10~33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사경 영업비밀 침해·유출사건 접수 현황 >

구분	'19.4.~12.	'20	'21	'22	'23	'24	합계
국내(건)	10	13	29	17	30	13	112
국외(건)	-	2	1	5	3	5	16
소계(건)	10	15	30	22	33	18	128

자료: 특허청

5) ‘참고자료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참조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5년 평균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43건이고, 지급금액은 6,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⁶⁾ 적발된 위조상품의 가액은 5년간 약 1조 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5년평균
신청건수(건)	100	101	38	21	6	266	53
지급건수(건)	89	83	27	13	4	216	43
지급금액 (백만원)	107	94	54	26	18	299	60
위조상품 가액* (억원)	1,900	1,445	6,687	220	740	10,992	2,198

자료: 특허청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는 현재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데,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⁷⁾ 등을 참고하여 예방과 단속이 필요한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⁸⁾

6) 2023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예산: 103백만원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포상금 관련 입법례)

8)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영업비밀 해외유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9.25.)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근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유출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기존의 ‘신고’ 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명칭을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을 조기에 포착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신고포상금’ 명칭을 ‘포상금’으로 변경함(안 제16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신고포상금’ 명칭을 ‘포상금’으로 변경하며, 적용례를 신설함(안 제16조 및 부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제목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특허청장이 이 법 시행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u>신고포상금</u>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신설>	제16조(<u>포상금</u>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② <u>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u>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u>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특허청장이 이 법 시행 후</u>
---	--	---

		<u>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u> ② <u>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 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u>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특허청장이 이 법 시행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u>신고포상금</u>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신고포상금</u> 을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제16조(<u>포상금</u> 지급) ① ----- ----- ----- ----- ----- ----- <u>포상금</u> ----- -----.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